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51442 판결 [점유회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유동주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04조 제3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회수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2019. 7. 4.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던 사실, 피고가 2019. 7. 4.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이하 '이 사건 침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위 점유침탈일인 2019. 7. 4.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침탈 이후에도 2019. 12. 25., 2020. 1. 17., 같은해 2. 3., 같은해 2. 4.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침탈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원고 주장 일시에 당진서 석문파출소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점유회수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경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존중하고자 하는 점유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식적으로 개개의 침탈행위로 볼만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사실관계가 최초의 침탈 이후 해당 침탈로 형성된 점유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면, 최초 침탈 이후 기존 점유 상태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침탈행위를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련의 침탈행위를 하나의 침탈행위로 보고 해당 침탈의 상태가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로서 존중할만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점유침탈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점유 침탈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침탈 이후 기존 원고의 침탈된 점유 상태가 회복되었음에도 피고가 재차 침탈행위를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탈로 형성된 점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실관계를 이 사건 침탈과는 별개의 새로운 침탈로 본다거나 해당 점유침탈상태의 계속을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침탈과 합하여 전체로서의 침탈상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살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8카단52520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2019. 7. 4.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침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점유해왔다고 진술한 사실, 위 사실을 기초로 위 소송의 항소심 사건(이하 ‘관련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에서 대전지방법원이 2021. 12. 24. 2020나107207 판결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가 2022. 4. 28.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침탈은 위 2019. 7. 4.부터 2021. 10.경까지 계속됐다고 보인다.

다)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진서 석문파출소에 신고한 내용은 이 사건 침탈 이후 이 사건 공장부지에 출입하는 피고 측 관련자들의 출입이나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침탈에 의한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피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시비가 생겼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다른 근거 없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침탈 외의 새로운 점유침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을 제4호증(준비서면)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1.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 중 피고가 침탈한 부분을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가 2021. 11.경 이 사건 침탈 부분을 점유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침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침탈 부분에 대한 점유 침탈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가 2021. 10.경 이 사건 침탈 부분을 회복했다가 다시 해당 부분의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2021. 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침탈이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침탈 이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침탈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추가 침탈에 의한 침탈 부분을 모두 회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21. 10.경 이후에 이 사건 침탈 부분에 대한 점유를 피고에게 환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점유의 ‘침탈’이라 함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2. 2. 28.선고 91다17443판결 등 참조), 점유자였던 원고의 의사에 기한 점유의 이전을 점유의 침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2021. 10.경 이후 이 사건 침탈 부분을 점유한 것도 점유의 침탈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심현우, 판사 임동환

별지